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4년 11월 2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12월 05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투자신탁의 전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일부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월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4년 11월 26일)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AL435)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금리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주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

2. 투자전략

① 미래에셋 코리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전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	0.55	0.35	-	0.55	56	115	177	309	687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11.01~24.10.31	22.11.01~24.10.31	21.11.01~24.10.31	19.11.01~24.10.31	
투자신탁	2013.10.24	4.48	4.76	3.01	2.09	1.90
비교지수		4.85	4.92	3.22	2.39	2.37
수익률 변동성		0.42	0.67	0.89	0.75	0.56

(주1) 비교지수 : (Customized)KIS종합채권지수(6M~2Y)
<KIS종합채권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Customized)KIS종합채권지수(6M~2Y)는 KIS종합채권지수를 구성하는 섹터인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성된 종목 중 만기가 6개월에서 2년인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로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4.10.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송진용	1975	본부장	37개	16,303억원	-	-	9.12	6.06	20년0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

		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방법	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
	개인연금저축 투자신탁의 세제혜택	가. 가입자격 : 1) 이 투자신탁은 만 20세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전환신청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가입한도 : 수익자는 월납입식 또는 분기납입식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매회 1만원이상 투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 세제혜택 : 투자신탁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라. 중도 해지 및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과세 1) 소득세 부과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지추징세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 (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u>※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u>※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u>**

전환절차 및 방법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24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증권(주식형)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증권(채권형)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증권(재간접형)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증권(혼합주식형)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전환절차 및 방법	증권(혼합채권형)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매출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24년 12월 05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AL43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전환형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전환형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가. 이 투자신탁은 만 20세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이 투자신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계약이전 및 전환신청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 (판매) 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AL43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3.10.24	최초설정
2014.03.03	전환가능 자투자신탁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14.04.28	전환가능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 개인연금 스마트롱숏3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 개인연금 스마트롱숏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 개인연금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 개인연금 로우볼인덱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2014.10.24	전환가능투자신탁 명칭변경(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및 전환가능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15.11.18	전환가능 자투자신탁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5단계 체계→6단계 체계)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7.09.28	전환가능 자투자신탁 삭제 (미래에셋개인연금로우볼인덱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022.11.25	위험등급 변경(6등급(매우 낮은 위험)→5등급(낮은 위험))
2023.01.13	투자대상자산(환매조건부매수) 추가
2024.06.28	전환가능 투자신탁 명칭 변경(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

	간접형))
2024.10.11	전환가능 투자신탁 명칭 변경(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송진용	1975	본부장	20년0개월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마케팅, 주식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4.10.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송진용	37개	16,303억원	-	-	9.12	6.06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서재춘	1970	대표	23년4개월	(99년~99년) 하나은행 채권운용 (99년~01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0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4.10.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재춘	28개	40,646억원	7.93	6.26	9.12	6.06	-	-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6 ~ 2010.08.30	서재춘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08.31 ~ 2013.06.13	한상경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3.06.14 ~ 현재	서재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에셋 개인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채권)
2. 미래에셋 개인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 미래에셋 개인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 개인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
6.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 인컴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7.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 개인연금 단기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
9. 미래에셋 개인연금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0.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1. 미래에셋 개인연금 스마트롱숏3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2. 미래에셋 개인연금 스마트롱숏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3. 미래에셋 개인연금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14. 미래에셋 개인연금 배당과인컴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5.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배당과인컴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6. 미래에셋 개인연금 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7.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8.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9.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1.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4.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5.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90% 이상

[개인연금저축 투자신탁]

가. 투자방식 및 투자기간

(1) 투자방식: 수익자는 월납입식 또는 분기납입식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매회 1만원이상 투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기간: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적립기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이전받기 전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기간도 투자기간에 통산합니다.
1. 적립기간: 10년이상
2. 거치기간: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3. 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수익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연금의 지급

(1) 연금의 지급개시

①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별도로 연금지급개시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립금을 10년이상 적립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경과된 후에는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개시합니다.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액 지급을 위한 자동환매 신청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동환매 신청일 : 연금지급일에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펀드별 환매주기에 맞춰 자동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는 날

(2) 연금 지급방식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text{연금지급액} = \frac{\text{잔고좌수}}{\text{잔여연금지급회수}} \times \frac{\text{1,000좌당 기준가격}}{\text{1,000}}$$

(3) 연급 지급주기

①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최초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 수익자가 약정연금지급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연금지급일 현재 투자재산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이전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해당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일괄 이전처리합니다. 이때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일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의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하며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5) 계약의 중도 해지

① 수익자가 연금지급 이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합니다.
②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세제혜택 및 적립증명서 발급등

①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수익자가 투자기간중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추징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연금투자신탁 수익증권 적립증명서(이하"적립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중도해지하거나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적립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 설명>

(1) 계약의 이전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금지급기준일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중 나중일을 말하며,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 수익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이후이어야 한다.

(3) 약정연금지급일

최초 연금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한다.

(4) 연금지급개시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5) 계약일

개인연금저축 (이하'개인연금')에 최초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의 이전"이 된 경우라 할 지라도 "계약의 이전"일이 아닌 수익자의 최초 개인연금 가입일을 계약일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주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90% 이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3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 (2)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 (2)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 코리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KIS종합채권지수(6M~2Y)

<KIS종합채권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Customized)KIS종합채권지수(6M~2Y)는 KIS종합채권지수를 구성하는 섹터인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성된 종목 중 만기가 6개월에서 2년인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로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2년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③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④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IS종합지수6M~2Y(듀레이션1.0~1.5)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등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적극적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97.5% VaR)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97.5% VaR)은 **1.46%** 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 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1.46%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1.46%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① 이 투자신탁은 만 20세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계약 이전 및 전환신청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1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다. 전환

[구 개인연금펀드 시리즈]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2.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6.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7.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9.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1.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3.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14.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6.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7.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8.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9.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1.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4.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5.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합니다.

3.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합니다.

4.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5.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합니다.

6.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7.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8.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합니다.

9.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10.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합니다.

1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합니다.

1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합니다. 다만, 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합니다.

2.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당일 17시[오후 5시]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1)항 및 (2)항에 따른 전환 시 적용되는 기준영업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5호: 판매회사의 영업일
2. 위 (1)항 제2호부터 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 제14호, 제17호부터 제19호, 제21호, 제24호: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모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⑧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⑨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판매수수료	-	매입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 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 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수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투자신탁	0.15	0.35	0.03	0.02	0.55	-	0.55	-	0.55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5,366
금융비용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6	115	177	309	6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6	115	177	309	687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 비과세

투자신탁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 중도 해지 및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과세

① 소득세 부과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주1)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해지추징세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 (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를 추징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그러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해외이주 및 해지전 6개월 이내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주1)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소득공제

매년적립금에 대하여 72만원한도 내에서 당해 적립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주식관련 사채에의 투자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9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2	지분증권인 주식등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음.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10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2년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③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④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

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IS종합지수6M~2Y(듀레이션1.0~1.5)

<KIS종합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아래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각 집합투자기구별 투자전략, 투자대상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명서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6)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7)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8)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9)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1)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12)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13)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4)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5)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16)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7)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8)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19)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0)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1)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22)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3)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4)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5)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및 투자 전략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솔로몬단기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하, 미래에셋 고배당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KOSPI 30% +(Customized)KIS국공채지수(3M~3Y)(70%)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 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 중 "고배당주"에 최소 80% 이상 투자합니다. ※ "고배당주"란? 직전 회계년도 결산배당금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 또는 예상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고배당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입시점에는 "고배당주"였으나 이후 "고배당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 매입된 주식은 "고배당주"로 봅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고배당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10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KOSPI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 중 "고배당주"에 최소 80% 이상 투자합니다. ※ "고배당주"란? 직전 회계년도 결산배당금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 또는 예상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고배당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입시점에는 "고배당주"였으나 이후 "고배당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 매입된 주식은 "고배당주"로 봅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30% 이하,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70% 이상, 두 투자신탁을 합산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 마켓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로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컨슈머 테마인 "그레이트 컨슈머" 관련 주식에 투자합니다. ② "그레이트 컨슈머"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특성 상 투자 종목의 범위를 소비재 업종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헬스케어, IT 업종 등 소비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에서는 상기와 같은 투자테마를 구현하기 위하여, 높은 브랜드 가치, 차별화 된 서비스 및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Consumer Preference)가 매우 높은 "글로벌 100대 브랜드 주식"또는 이머징마켓 소비 및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리딩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요국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며, 섹터 내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섹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의 투자기회 발생 시 일부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이머징 마켓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로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컨슈머 테마인 "그레이트 컨슈머" 관련 주식에 자산 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그레이트 컨슈머"관련 주식이란 높은 브랜드 가치, 차별화 된 서비스 및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Consumer Preference)가 매우 높은 "글로벌 100대 브랜드 주식" 또는 이머징마켓 소비 및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리딩기업을 의미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향후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중산층 부상,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투자테마에 부합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이러한 투자테마는 거시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①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지역(이머징/선진국/한국), 발행기관(국공채/회사채), 등급(투자등급/투기등급), 만기수준(장기/중기/단기)등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글로벌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탄력적으로 채권섹터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섹터 자산배분 리밸런싱과 시장 이벤트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10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② 이 투자신탁은 향후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중산층 부상,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투자테마에 부합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이러한 투자테마는 거시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모투자신탁인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지역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주요국가 채권 시장 및 투자대상 유형별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며, 투자대상 유형별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50% 이상 60% 이하, "미래에셋 글로벌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40% 이상 50%미만, 두 투자신탁을 합산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 글로벌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을 활용하여 주가하락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요국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며, 섹터 내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섹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의 투자기회 발생 시 일부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 글로벌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을 활용하여 주가하락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모투자신탁인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 미래에셋 글로벌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 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10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MSCI ACWI Health Care Index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의료 관련 기업 또는 건강관련 제품/서비스 제공 기업 등 의료 또는 건강관리(Healthcare) 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전략 상 투자대상을 의료 또는 건강관리(Healthcare) 업종에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다른 업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코리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Customized)KIS종합채권지수(6M~2Y)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코리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2년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50% 이상 60% 이하, "미래에셋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40% 이상 50%미만, 두 투자신탁을 합산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요국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며, 섹터 내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섹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의 투자기회 발생 시 일부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Covered call)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①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90%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70% + MMI×30%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Covered call)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이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합니다. ※비교지수: KOSPI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이 중 "소비자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80%이상으로 합니다. "소비자 관련주"란 소비자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제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며,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소비자관련주였으나 이후 소비자관련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된 주식도 소비자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3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비교지수: KIS국고채1~2년×100%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3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주식투자부분에 대하여 주로 활용할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 등을 구사합니다. ▷ Long-Short 전략 : 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 ▷ Pair Trading 전략 : 동일 산업 내 기업 경쟁력 차이나 세부 업황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을 구축하거나, 다른 산업 간 거시환경 및 각종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거나 장기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④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비교지수: KIS국고채1~2년×80% + KOSPI×20%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50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에 50%미만으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투자부분에 대하여 주로 활용할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 등을 구사합니다. ▷ Long-Short 전략 : 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 ▷ Pair Trading 전략 : 동일 산업 내 기업 경쟁력 차이나 세부 업황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을 구축하거나, 다른 산업 간 거시환경 및 각종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거나 장기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비교지수: MSCI Asia ex Japan Index 95% + Call금리 5%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미래에셋글로벌 디스커버리펀드(Mirae Asset Global Discovery Fund)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아시아 그레이트컨슈머주식펀드(Mirae Asset Asia Great Consumer Equity Fund)"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주식 펀드(Mirae Asset Global Discovery Fund - Mirae Asset Asia Great Consumer Equity Fund)"는 높은 성장률과 도시화, 그리고 중산층 증가 등으로 강력한 소비 파워를 가진 아시아지역(일본 제외)의 소비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90%이상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 KOSPI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운용 전략상 40% 이내에서 일부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80% 이하로 투자하며,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 KOSPI×70% + KIS종합지수×30%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운용 전략상 40% 이내에서 일부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마에스트로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운용 전략상 40% 이내에서 일부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① 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비교지수: (Customized)KIS국공채/은행채/회사채(1년 이상)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① 국내 주식에 50% 미만 수준으로 투자하는 한편 50% 이상 수준으로 국내 채권에 투자합니다. ②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각각의 투자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주식 부문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높은 매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부문 발행인의 신용 상태, 채권 듀레이션 및 위험 등을 참고하여 운용역의 판단하에 운용되며 이에 따라 매매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 KOSPI(50%)+(Customized) KIS종합채권지수(A+이상, 3M~3Y)(50%)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20% 이하,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KOSPI 지수(20%)+(Customized)KIS국공채지수(3M~3Y)(80%)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 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중 가치주에 최소 80%이상을 투자합니다. ② 가치주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들을 말하며, 이들 주식을 대상으로 한 투자후보군 중에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 ROE(자기자본이익률), EPS(주당순이익)성장률, 순부채비율, 배당성향 등의 변수를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활용한 다변량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업의 가치 대비 일정수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 이때 고평가/저평가 여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또는 PER(주가/순이익비율) 등 정량적 지표와 지배구조개선, 주주친화정책등 정성적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기술, 특허, 라이선스, 원가우위 등의 본원적 경쟁력을 갖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40% 이하,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KOSPI 지수(40%)+(Customized)KIS국공채지수(3M~3Y)(60%)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 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중 가치주에 최소 80%이상을 투자합니다. ② 가치주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들을 말하며, 이들 주식을 대상으로 한 투자후보군 중에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 ROE(자기자본이익률), EPS(주당순이익)성장률, 순부채비율, 배당성향 등의 변수를 활용한 다변량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업의 가치 대비 일정수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 이때 고평가/저평가 여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또는 PER(주가/순이익비율) 등 정량적 지표와 지배구조개선, 주주친화정책등 정성적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기술, 특허, 라이선스, 원가우위 등의 본원적 경쟁력을 갖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이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100% 이하로 투자합니다. ※비교지수: 없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90% 이하로 투자합니다. ②투자자산의 대부분은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중인 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이 운용중인 룩셈부르크 설정 역외집합투자기구(SICAV)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이 운용중인 미국 설정 집합투자기구 - 그 외 해외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③정기적으로 글로벌경제 및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통해 지역 또는 자산별 매력도를 판단하고,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또한, 위험/수익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비중조정 및 집합투자기구 교체를 실행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9기(21.10.24 ~ 22.10.23)	적정
10기(22.10.24 ~ 23.10.23)	적정
11기(23.10.24 ~ 24.10.23)	감사의견 확정 전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11기(24.10.23)	10기(23.10.23)	9기(22.10.23)
운용자산	40,386	38,362	36,395
증권	39,985	37,979	36,030
파생상품	-	-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201	183	365
기타운용자산	200	200	-
기타자산	-	-	-
자산총계	40,387	38,363	36,396
운용부채	-	-	-
기타부채	1,786	1,620	49
부채총계	1,786	1,620	49
원본	38,600	36,742	36,657
수익조정금	-	-	-
이익잉여금	-	-	-311
자본총계	38,600	36,742	36,346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11기(23.10.24 ~ 24.10.23)	10기(22.10.24 ~ 23.10.23)	9기(21.10.24 ~ 22.10.23)
운용수익	1,962	2,030	-76
이자수익	10	9	3
배당수익	1,112	387	355
매매/평가차익(손)	838	1,633	-434
기타수익	-	-	-
운용비용	221	204	204
관련회사보수	219	202	202
매매수수료	1	-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1,740	1,826	-280
매매회전율	-	-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11기(24.10.23)	10기(23.10.23)	9기(22.10.23)
운용자산	40,386	38,362	36,395
증권	39,985	37,979	36,030
주식	-	-	-
ETF	-	-	-
채권	-	-	-
매입어음	-	-	-
수익증권	39,985	37,979	36,030
외화유가증권	-	-	-
기타유가증권	-	-	-
파생상품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ELS	-	-	-
ELW	-	-	-
DLS	-	-	-
부동산/실물자산	-	-	-
부동산	-	-	-
현금 및 예치금	201	183	365
예금	201	183	365
외화예금	-	-	-
CD	-	-	-
정기예금	-	-	-
위탁증거금	-	-	-
청약증거금	-	-	-
기타운용자산	200	200	-
콜론	200	200	-
환매조건부채권	-	-	-
기타자산	-	-	-
미수이자	-	-	-
미수배당금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	-	-
선물정산미수입금	-	-	-
선납(선급)원천세	-	-	-
기타	-	-	-
자산총계	40,387	38,363	36,396
운용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	-
미지급주식	-	-	-
미지급채권	-	-	-
미지급ETF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기타부채	1,786	1,620	49
미지급보수	52	51	49
미지급해지금	-	-	-
미지급이익분배금	1,732	1,568	-
미지급원천세	-	-	-
기타부채	-	-	-
부채총계	1,786	1,620	49
원본	38,600	36,742	36,657
수익조정금	-	-	-
이익잉여금	-	-	-311
당기순이익	-	-	-
감자차익/차손	-	-	-
자본총계	38,600	36,742	36,346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11기(23.10.24 ~ 24.10.23)	10기(22.10.24 ~ 23.10.23)	9기(21.10.24 ~ 22.10.23)
운용수익	1,962	2,030	-76
투자수익	1,123	397	358
이자수익	10	9	3
배당수익	1,112	387	355
기타수익	-	-	-
매매이익	881	1,633	3
주식매매이익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채권매매이익	-	-	-
외환거래이익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ETF매매이익	-	-	-
수익증권매매이익	881	1,633	3
기타매매이익	-	-	-
매매손실	42	-	437
주식매매손실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채권매매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ETF매매손실	-	-	-
수익증권매매손실	42	-	437
기타매매손실	-	-	-
운용비용	221	204	204
위탁보수비	59	55	55
판매보수비	139	129	128
수탁보수비	11	11	11
사무관리보수비	7	7	7
자문보수비	-	-	-
매매수수료	1	-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1,740	1,826	-280
비용	264	204	642
수익	2,004	2,030	361
천좌당 순이익(원)	44	50	-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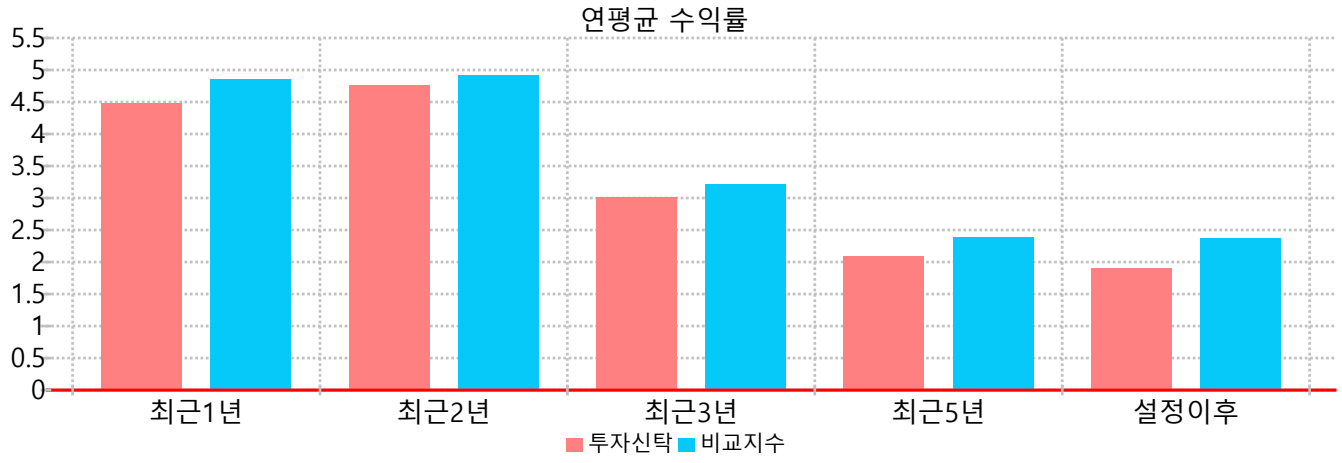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금액
'21.10.24~' 22.10.23	38,383	38,358	21,360	21,335	23,087	23,066	36,657	36,626	-
'22.10.24~' 23.10.23	36,657	36,346	15,056	15,445	14,971	15,307	36,742	36,484	-
'23.10.24~' 24.10.23	36,742	36,742	22,465	23,016	20,607	21,166	38,600	38,592	1,56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이후
(기간)	23.11.01~ 24.10.31	22.11.01~ 24.10.31	21.11.01~ 24.10.31	19.11.01~ 24.10.31	설정일~ 24.10.31
투자신탁	4.48	4.76	3.01	2.09	1.90
비교지수	4.85	4.92	3.22	2.39	2.37
수익률 변동성	0.42	0.67	0.89	0.75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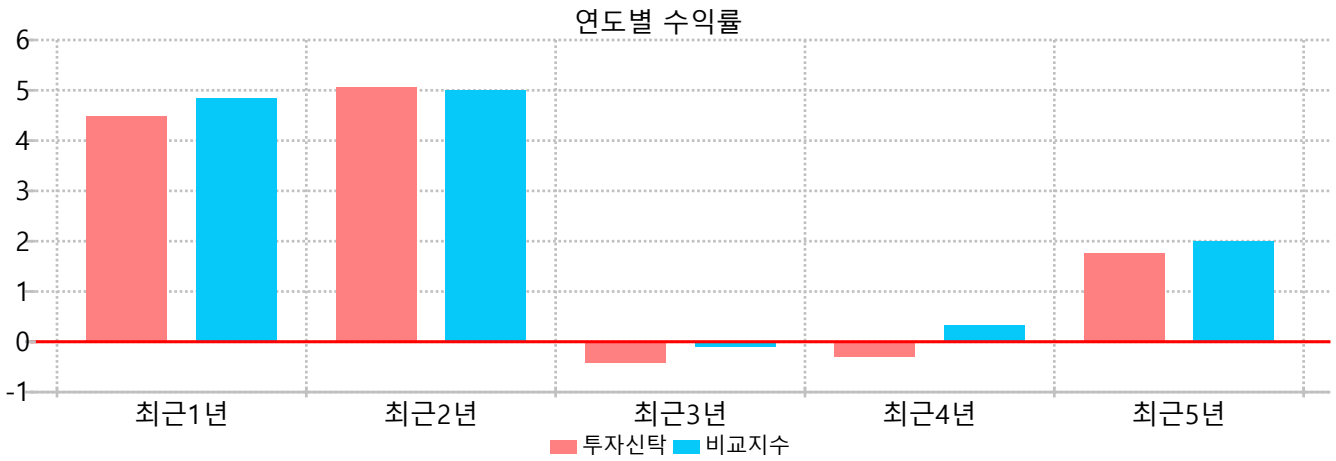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3.11.01~ 24.10.31	22.11.01~ 23.10.31	21.11.01~ 22.10.31	20.11.01~ 21.10.31	19.11.01~ 20.10.31

투자신탁	4.48	5.05	-0.41	-0.30	1.75
비교지수	4.85	5.00	-0.10	0.32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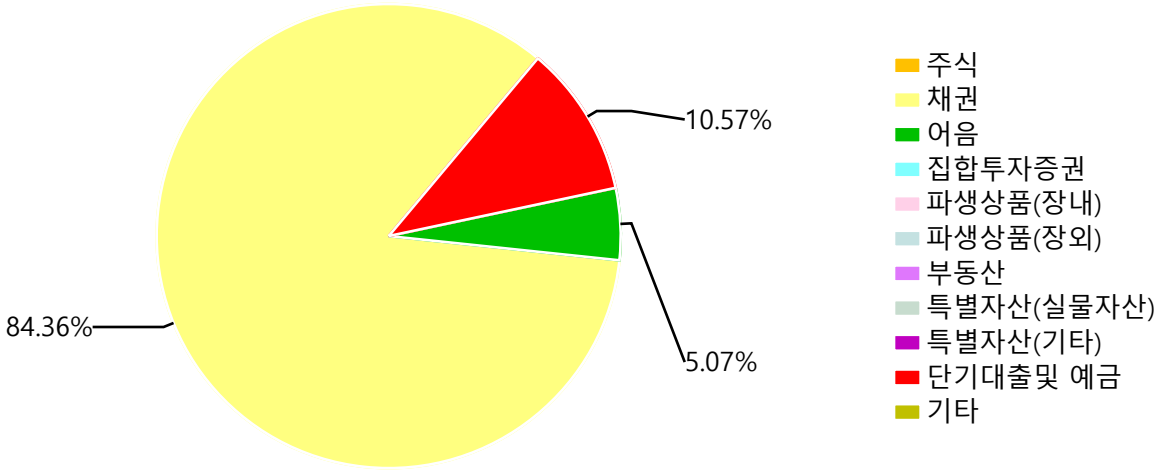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는 (Customized)KIS종합채권지수(6M~2Y)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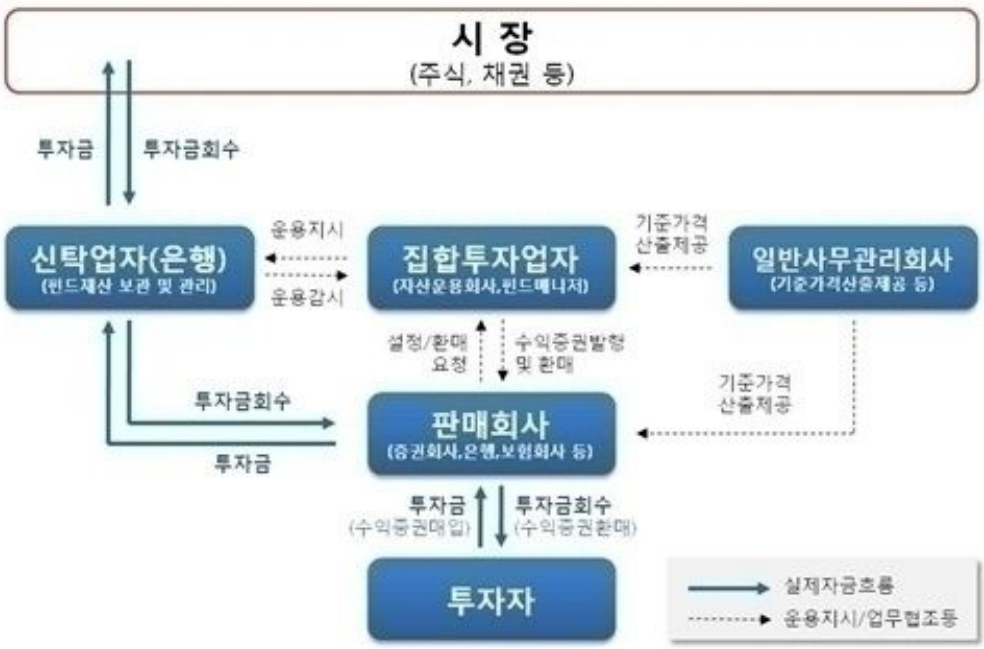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24.09.3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한국)	-	33,770	2,031	-	-	-	-	-	-	4,231	-	40,032
	-	84.36	5.07	-	-	-	-	-	-	10.57	-	100
합계	-	33,770	2,031	-	-	-	-	-	-	4,231	-	40,032
	-	84.36	5.07	-	-	-	-	-	-	10.57	-	100

자산구성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3조 3,469억원 (2023년 12월 31일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3.12.31	2022.12.31	항 목	2023.01.01 ~ 2023.12.31	2022.01.01 ~ 2022.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640	22,074	영업수익	391,366	371,345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85,435	112,424	영업비용	296,170	265,533
유가증권	4,148,452	3,938,211	영업이익	95,196	105,81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1,437	28,334	지분법손익	427,199	475,352
기타자산	5,950	7,069	영업외수익	1,506	1,232
자산총계	4,363,914	4,108,112	영업외비용	2,132	2,545
예수부채	89,015	10,855	법인세차감전이익	521,769	579,851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619,171	606,564	당기순이익	448,969	555,086
기타부채	308,865	335,885			
부채총합	1,017,051	953,304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246,633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4,612	236,077			
이익잉여금	3,027,757	2,604,237			
자본총계	3,346,863	3,154,808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9.30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혼합자산	PEF	투자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51,116	3,902	4,354	40,313	99,685	4,764	22,748	11,363	45,841	8,984	8,924	644	-	202,95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 02- 2004- 0000
홈페이지	www.kr.hsbc.com
연혁	1984년 12월 지점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및 연락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페이지	korfp.com
연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
홈페이지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증권의 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